

롯데푸드 주식회사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롯데푸드 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LOTTE FOODS CO., LTD.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마아가린, 쇼트닝제조 및 판매업
2. 유지제조 가공 및 판매업
3. 빙과제조 및 판매업
4. 드라이아이스 제조 및 판매업
5. 산소 및 수소 제조 및 판매업
6. 유산균음료 및 발효유와 청량음료 제조 및 판매업
7. 조미료류(식초, 후추, 마요네즈, 케첩, 카레, 스프, 기타) 제조 및 판매업
8. 사료 제조 및 판매업
9. 비누 및 세제 제조 및 판매업
10. 면류 및 빵류 제조 및 판매업
11. 수출입업 및 수출입품 판매업
12. 농축수산물 가공처리 및 판매업
13. 창고업 및 부동산 임대업
14. 인스턴트식품 제조 및 판매업
15. 장류 제조 및 판매업
16. 건포류 제조 및 판매업
17. 식품가공 및 판매업
18. 합성수지용기 제조 및 판매업
19. 과자류 제조 및 판매업
20. 과실 및 야채통조림 제조 및 판매업
21. 과실 및 야채가공저장업 및 판매업
22. 얼음 제조 및 판매업
23. 산업용 냉동장비 제조 및 수리업
24. 지방산 및 지방산유도체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25. 도시락 제조 및 판매업
26. 식자재 유통업
27. 광천음료수 제조 및 판매업
28. 냉동식품 제조 및 판매업
29. 연수원 운영업
30. 원료의약품 제조업 및 판매업
31. 전분 제조 및 판매업
32. 당류 및 엿류 제조 및 판매업
33. 배합사료첨가물 제조 및 판매업
34. 대두 종합가공 및 탈지대두 판매업
35. 식품첨가물 제조 및 판매업
36. 식품소분 판매업
37. 화공약품 제조 및 판매업
38. 다류 제조 및 판매업
39. 유통전문 판매업
40. 조미식품 제조 및 판매업
41. 음식점업 및 급식업
42. 프랜차이즈점 모집 및 운영업
43. 기타 식품제조 가공업 및 판매업
44. 기타 식품 판매업
45.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46. 작물재배업 및 판매업
47. 축산업
48.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49. 도축, 육류 가공처리 및 판매업
50. 낙농제품 제조, 가공 및 판매업
51. 곡물 가공품 제조 및 판매업
52. 알콜음료 제조 및 판매업
53. 사회복지서비스업
54. 기술용역 제공사업
55. 어로어업
56.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57. 장비임대업(식품제조장비 등)
58. 무점포소매업
59. 주택건설사업

- 60. 대지조성사업
- 6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62. 수산물이동 저장 처리업 및 판매업
- 63. 화물운송업
- 64. 물류서비스업
- 65. 음식료품 도소매업
- 66. 계면활성제,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 67. 신재생에너지 사업
- 68. 지정외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 69.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소재지)

-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

제4조 (광고방법)

이 회사의 광고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lottefoods.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5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삼백만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의 주식은 1주의 금액을 5,000원으로 한다.

제7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7조의 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삼십

육만주 이내로 한다.

-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9%이상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제9조 (신주인수권)

-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제3자 배정,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 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10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업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이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업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업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사 채

제12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삭제)

제13조 (기준일)

- ① 이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②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의 정지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14조 (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제1항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9조 제1항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제1항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9조 제1항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6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17조 (소집시기)

-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8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단, 복수의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의장을 정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4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제한)

이 회사, 이 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5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0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그 개시 전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8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이사회·위원회

제29조 (이사 의 수)

-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9인 이하로 한다.
- ② 회사의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이사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제30조 (이사 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이 회사는 2인이상의 이사 선임 시 상법 제38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집중투표의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이사 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2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32조 (이사의 보선)

-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③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 의결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34조 (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업무를 총괄하며,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이사 중 이사회에서 결정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의 2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이사회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3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36조 (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투명경영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4. 경영위원회
 5. 보상위원회
 6.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5조, 제38조,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① 이사회의 결의로 이 정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8조 (이사회회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 2 (회사기회 유용 금지) 및 제398조 (자기거래 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9조 (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0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6 장 감사위원회

제41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전원 사외이사로 한다.
- ③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④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⑦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대표이사에게 제

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43조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7장 계 산

제44조 (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45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 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6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 하여야 한다.

제47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년도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48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8조의2 (중간배당)

- ① 이 회사는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이익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④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49조 (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